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 개요	3
□ 기업지배구조 현황		
I. 지배구조 일반	4
II. 주주	6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6
■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5
III. 이사회	24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24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33
■ 핵심원칙 5) 사외이사 책임	44
■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51
■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54
■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60
IV. 감사기구	67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68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77
V. 기타 주요사항	83
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88

□ 개요

1. 기업명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2. 작성 담당자 : (정) 전략기획실장 상무 김해곤

031-525-2005 / hkg0928@gmail.com

(부) 전략기획실 경영관리팀장 수석 이준재

031-525-2090 / baobei1124@hyundaigreenfood.com

3. 작성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주) 본 문서의 "공시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공시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작성기준일 이후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된 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4. 기업 개요

최대주주	정교선 외 2명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38.44%
		소액주주 지분율*	18.83%
업종	비금융	주요 제품	단체급식, 식자재유통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현대백화점		

주) 국내/국외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제외

요약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34,861	32,385	31,243
연결 영업이익	586	786	899
연결 계속사업이익	413	816	639
연결 당기순이익	413	816	639
연결 자산총액	31,100	30,685	29,666
별도 자산총액	17,716	17,602	16,955

I. 지배구조 일반

□ 지배구조의 일반사항

당사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지속성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당사 지배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제정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근거하여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정관을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과 이사회 주요활동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IR 담당자 직통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정보공개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선정하여,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주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검증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헌장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상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영진을 감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을 독려하며,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법무, 식품 각 분야별 전문가이며,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의 특징

1) 권한의 배분, 견제와 균형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사항, 주주총회에서 부여 받은 권한 등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객관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

이사의 주요 정기안건을 위원회로 위임하고, 사외이사가 모든 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면서 위원장을 수행함으로써 철저히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위원회 제도를 안착하고, 보다 권한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사외이사의 역할 및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법률/행정, 식품의약품/위생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사외 이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이사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해 미리 사외이사에게 보고/설명함으로써 정보 불균형성을 제거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의 현황(요약)

기관	구성 (사외이사/구성원)	의장/의원장 (성명/구분)	역할
이사회	3 / 9	박홍진 (대표이사)	· 법령,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 주주총회 위임 사항 의결 · 경영진의 업무진행 관리/감독
감사위원회	3 / 3	신수원 (사외이사)	·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수행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3 / 4	정병두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의 검증 및 추천 · 사외이사는 반드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임 가능(정관 제33조)
내부거래위원회	3 / 4	정병두 (사외이사)	· 대규모 내부거래의 적정성 심사
보상위원회	2 / 3	유원곤 (사외이사)	· 등기임원의 성과 및 보상정책 평가
ESG 경영위원회	3 / 4	신수원 (사외이사)	· ESG 경영 관련 업무 검토 및 결과 보고

II.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I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I - 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i) 주주총회 개최내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3주 전 또는 그 이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기준인 '2주 전' 기준보다 앞서 공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지체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공고하여 모든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관점에서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공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매년 12월 31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①-1

기관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년 2월 25일 (D-32)	2021년 2월 22일 (D-34)	2020년 2월 24일 (D-35)

소집공고일	2022년 2월 28일 (D-29)	2021년 2월 26일 (D-30)	2020년 2월 28일 (D-31)	
주주총회 개최일	2022년 3월 29일 (화)	2021년 3월 29일 (월)	2020년 3월 30일 (월)	
공고일과 총회일 기간	총회일 29일전	총회일 30일전	총회일 31일전	
개최장소	본점/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1% 이상 주주),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신문 공고(한국경제신문),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예탁결제원에서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10명 중 7명 참석 (70%)	10명 중 7명 참석 (70%)	10명 중 6명 참석 (60%)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3명 참석 (100%)	3명 중 3명 참석 (100%)	3명 중 3명 참석 (100%)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주주 없음	발언주주 없음	발언주주 없음

나.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들의 권리를 제고하고, 의결권 행사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52기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부터(2020년) 법정 소집통지 기한(상법 제542조의 4, 총회일 2주 전) 보다 앞선 총회일 4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집공고에서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 후보자의 약력,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주주들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세부원칙 1 -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에 관련된 제도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등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예상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②-1

구분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주총회 집중일	3월 25일, 3월 30일 3월 31일	3월 26일, 3월 30일 3월 31일	3월 13일, 3월 20일 3월 26일,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일	2022년 3월 29일	2021년 3월 29일	2020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예	예	예
서면투표 실시 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 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예	예	예

(ii) 서면투표 · 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상법 제 368조의 3 에서는 정관에서 정하여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자공시시스템 소집 공고 시에 대리행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므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주주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주주권 행사 편의를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시행 중이며, 금번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상 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 편의와 권익을 제고하였습니다.

(iii)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2021년 1월 1일 ~ 2022년 3월 29일)

▷ 표 1-②-2

① 제53기 정기 주주총회(2021년 3월 29일)

안건	결의 구분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 ①	①종 해당 안건에 의견 표시한 주식 수	찬성 주식 수
						반대 및 기권 주식 수
제1호	보통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7,306,927	67,753,155	65,087,839 (96.1)
					(77.6)	2,665,316 (3.9)
제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7,306,927	67,753,155	67,542,370 (99.7)
					(77.6)	210,785 (0.3)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흥진)	가결	87,306,927	67,753,155	63,269,435 (93.4)
					(77.6)	4,483,720 (6.6)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교선)	가결	87,306,927	67,753,155	66,879,747 (98.7)
					(77.6)	873,408 (1.3)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지영)	가결	87,306,927	67,753,155	67,116,889 (99.1)
					(77.6)	636,266 (0.9)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신수원)	가결	87,306,927	67,753,155	65,589,891 (96.8)
					(77.6)	2,163,264 (3.2)

제4호	보통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신수원)	가결	47,489,293	27,935,521	25,708,903 (92.0)
					(58.8)	2,226,618 (8.0)
제5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유원곤)	가결	47,489,293	27,935,521	27,602,915 (98.8)
					(58.8)	332,606 (1.2)
제6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87,306,927	67,753,155	67,398,353 (99.5)
					(77.6)	354,802 (0.5)

② 제54기 정기 주주총회(2022년 3월 29일)

안건	결의 구분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 ①	①중 해당 안건에 의견 표시한 주식 수	찬성 주식 수
						반대 및 기권 주식 수
제1호	보통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7,306,927	63,959,779	60,776,566 (95.0)
					(73.3)	3,183,213 (5.0)
제2호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87,306,927	63,959,779	63,652,677 (99.5)
					(73.3)	307,102 (0.5)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지선)	가결	87,306,927	63,959,779	63,684,420 (99.6)
					(73.3)	275,359 (0.4)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장호진)	가결	87,306,927	63,959,779	63,434,901 (99.2)
					(73.3)	524,878 (0.8)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진원)	가결	87,306,927	63,959,779	63,653,301 (99.5)
					(73.3)	306,478 (0.5)

제3호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정병두)	가결	87,306,927	63,959,779	60,377,345 (94.4)
					(73.3)	3,582,434 (5.6)
제4호	보통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정병두)	가결	47,489,293	25,761,465	22,486,600 (87.3)
					(54.2)	3,274,865 (12.7)
제5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87,306,927	63,959,779	62,426,617 (97.6)
					(73.3)	1,533,162 (2.4)

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주 권익 보호, 주주총회 참여 독려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 개최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그 결과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73.3%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주주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의결권의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I - 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관련사항

(i)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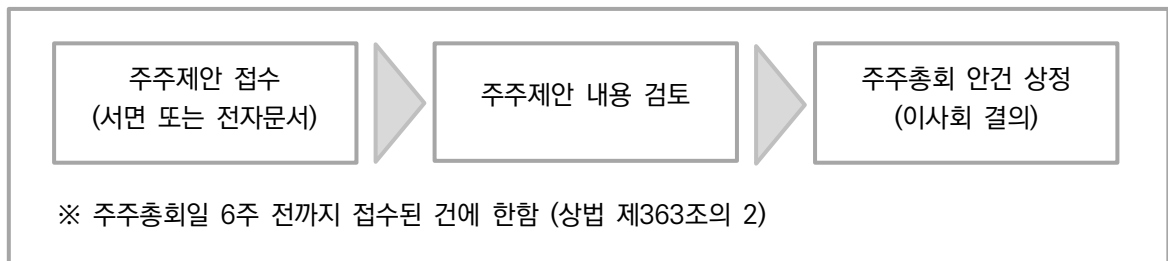
당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행사된 적이 없으나, 주주제안권 관련사항을 홈페이지 내 기업지배구조 부분에서 상세하게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hyundaigreenfood.com/po/ii/cog/IICOG02C.hgc>)

(ii) 주주제안 처리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여부

당사는 주주제안권의 근거, 제안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련된 법적사항과 함께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주주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직통 연락처 또한 안내되어 있으므로, 주주 질의 시 즉각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제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ii)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최근 3년간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iv)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당사에 대해 공개서한이 제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주주제안 또는 주주 공개서한 내역이 없었으나,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과 함께 법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함으로써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 - 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재무구조, 현금흐름, 향후 투자계획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두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권익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당사 주주환원정책의 근거와 함께 향후 3년간 연결기준 2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며 최저 주당 배당액 210원을 보장하는 배당정책을 2021년 2월 8일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지난 2019년 2월 8일에 최초로 3개년 배당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IR 활동과 투자자 미팅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회사의 내·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2월 8일에 기존 정책 대비 개선된 배당정책을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정책의 지속기간을 3년으로(2023년 사업연도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지속적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5년간의 배당정보에 대해 홈페이지에 요약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 최초로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표하였고, 제시된 3년 기간 동안 배당정책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기존 대비 향상된 배당성향과 주당 최소 배당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배당정책을 공표하였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 - 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한 사항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 표 1-⑤-1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원)	총 배당금 (백만원)	시가 배당률 (%)	배당성향 (%)	
								연결기준	별도기준
2019년					210	18,334	1.8	33.5	29.7
2020년	12월	보통주	미실시	500원	210	18,334	2.4	25.8	48.6
2021년					210	18,334	2.5	42.2	30.2

주) 시가배당률은 당해년도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주2)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당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ii) 차등배당 ·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당사는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정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등배당 ·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당사는 정기배당 외에 차등배당 ·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금배당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배당지급액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녹록치 않았던 경영환경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인건비 부담 증가, 신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확대 등) 과 함께, 종속회사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여 배당지급액에 대한 인하 요인이 충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배당지급액 동결 및 배당 성향을 연결기준 20% 이상 유지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가장 직접적인 환원 수단인 현금배당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주주환원을 실시함으로써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환원정책에 관련된 제언들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II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II- 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한 사항

(i)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 표 2-①-1

구 분	발행가능주식수 (주)	발행주식수 (주)	발행비율	비 고
보통주	200,000,000	97,704,482	48.85%	액면가 500원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 주주총회 또한 실시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주주 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보통주식 주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관련 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당사는 종류주식(우선주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류 주주총회 또한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 등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및 공시시점 이전까지 진행한 주요 IR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2-①-2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 고
2021.05.20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6.10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6.17	국내 기관투자자	IR	1분기 실적 및 2분기 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2022.02.2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황 설명	2건
2022.03.17	국내 기관투자자	IR	주요 경영현황 설명	온라인 컨퍼런스
2022.03.23	국내 기관투자자	IR	주요 경영현황 설명	온라인 컨퍼런스

표에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IR 및 해외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이 외에도 1주 평균 2~3회 정도의 IR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IR자료실에 당사의 IR 관련자료를 게시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내에 IR 담당자의 직통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직접 연결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영문 공시 내역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문공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 IR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전화/e-mail 등 소통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R 담당자의 연락처 또한 영문 홈페이지에도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iv) 공정공시 내역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중요정보를 공정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공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및 공시시점 이전까지 진행된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2-①-4

일 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2.08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0년 연간 잠정실적 공시
2021.02.08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배당정책 수립 관련 안내
2021.05.10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1년 1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1.08.0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1년 2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1.11.08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1년 3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2.02.14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1년 연간 잠정실적 공시
2022.05.12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2년 1분기 잠정실적 공시

당사는 지난 2021년 3월에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정보가 시의적절하고 적법하게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규정에서는 공정공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특정 투자자/주주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가 먼저 제공되는 등 공정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의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실적의 경우 분/반기보고서 제출 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분기 공정공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8일에는 당사의 3개년 배당정책 수립에 대해 공시하여 투자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영실적 외에도 투자계획·지배구조 변동·지배구조 헌장 제정 등,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시의적절하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투자자 권익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등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 적시, 충분히, 공정히 제공하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 관련 법/규정과 함께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 등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상 공시 정보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누구든 제한 없이 공평하게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관계로 대면 미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와는 정기적으로 컨퍼런스콜 또는 온라인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IR 담당자 직통 연락처를 통해 개인투자자 문의도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II - 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이사회는 결의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결의정족수는 참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해당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진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반사례 또한 없습니다. 당사의 정기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참석 이사 및 위원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권이 배제된 경우 주석을 통하여 별도 표기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해당 내용을 정기/수시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사외이사를 다수(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음으로써 내부거래 관련 통제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ii) 내부거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여부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매년 사업연도 말 다음 사업연도에 예상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의 규모, 조건,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2022년의 예상 내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	예상금액	주요 내역
(주)현대백화점	1,149억	(매출) 농/축/수산물, 공산품 등 직매입상품 매출 외 (매입) 상품판매 수수료, 임대수수료 외
(주)한무쇼핑	372억	(매출) 농/축/수산물, 공산품 등 직매입상품 매출 외 (매입) 상품판매 수수료, 임대수수료 외
(주)현대홈쇼핑	24억	(매출) 농/축/수산물, 공산품 등 직매입상품 매출 외 (매입) 사무실 임대료 외
(주)현대캐터링시스템	1,430억	(매출) 사무실 임대료, 단체급식 이용료 외 (매입) 인력공급 수수료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57억	(매출) 단체급식 이용료 외 (매입) 식재료 매입 외
(주)현대아이티앤이	42억	(매출) 단체급식 이용료 외 (매입) IT 유지 및 보수 용역

주) 상기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매 분기별로 보고 및 검토되고 있으며, 영업상 필요한 최소 수준의 거래만 진행되고 있음

(i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분거래]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이해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매출거래]

(순액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합 계	매 출	
			매 출	기 타
합 계		72,168	72,131	37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현대백화점	49,577	49,541	37
종속기업	(주)현대드림투어	17	17	
	(주)현대캐터링시스템	142	142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1,495	1,495	
	(주)현대에버다임	622	622	
	(주)현대리바트	3,264	3,264	
	(주)현대아이티앤이	233	233	
관계기업	(주)현대홈쇼핑	628	628	
	(주)현대퓨처넷	5	5	
	한무쇼핑(주)	14,422	14,422	
	(주)현대이지웰	18	18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및 기타	(주)한섬	179	179	
	(주)현대에이치씨엔	58	58	
	(주)현대백화점면세점	57	57	
	(주)현대엘앤씨	510	510	
	(주)현대렌탈케어	612	612	
	(주)현대바이오랜드	323	323	
	(주)나이스웨더	4	4	

[매입거래]

(순액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합 계		
			매 입	기 타
합 계		221,254	149,582	71,672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현대백화점	45,336	2,946	42,390
종속기업	(주)현대드림투어	2		2
	(주)현대캐터링시스템	140,899	139,357	1,542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4,444	4,443	
	(주)현대에버다임	13	3	10
	(주)현대리바트	4,866	1,108	3,757
	(주)현대아이티앤이	3,783		3,783
관계기업	(주)현대홈쇼핑	1,519	19	1,500
	(주)현대퓨처넷	98,787	17,053	81,734
	한무쇼핑(주)	19,806	1,463	18,343
	(주)현대이지웰	31		31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주)현대에이치씨엔	197	29	168
	(주)현대렌탈케어	226	162	64
	(주)현대바이오랜드	34	34	

[채권거래]

(순액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합 계	매출채권 및 미수금	
			매출채권 및 미수금	임차보증금
합 계		34,649	31,885	2,764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현대백화점	23,627	21,852	1,775
종속기업	(주)현대드림투어	1	1	
	(주)현대캐터링시스템	183	183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153	153	
	(주)현대에버다임	69	69	
	(주)현대리바트	83	83	
	(주)현대아이티앤이	24	24	
관계기업	(주)현대홈쇼핑	183	147	36
	한무쇼핑(주)	10,100	9,147	953
	(주)현대이지웰	22	22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주)한섬	10	10	
	(주)현대렌탈케어	70	70	
	(주)현대엘앤씨	47	47	
	(주)현대백화점면세점	47	47	
	(주)현대바이오랜드	31	31	

[채무거래]

(순액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합 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합 계		29,582	19,765	9,817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현대백화점	5,108	643	4,465
종속기업	(주)현대드림투어	59	17	42
	(주)현대캐터링시스템	16,684	16,661	23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634	625	9
	(주)현대에버다임	2	2	
	(주)현대리바트	6,659	1,381	5,278
	(주)현대아이티앤이	367	367	
관계기업	(주)현대홈쇼핑	2	2	
	한무쇼핑(주)	32	32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및 기타	(주)현대렌탈케어	22	22	
	(주)현대퓨처넷	13	13	
	(주)나이스웨더	1	1	

세부원칙 II - 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이하 “지배구조 및 사업 개편”으로 표기) 관한 사항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및 사업 개편이 진행된다면, 주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추후 진행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대주주를 대상으로 상법 제360조의 5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자사주 매입 등)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주친화 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고려하며, 향후 기업 비전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 IR, 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주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경우,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당사는 공시대상 사업연도 내에 “지배구조 및 사업 개편”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사항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과(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적 비전 제시와 적극적인 IR활동 등 주주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Ⅲ.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Ⅲ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Ⅲ- 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는 이러한 권한을 정관 제 34조, 이사회 규정 제 11조에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의결 사항	비 고
상법상의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소집 · 경영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생 · 사채의 모집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겸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 내부거래위원회 위임
회사경영에 대한 중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의 결정 · 사업계획의 승인 ·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의 승인 ·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포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ii)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당사는 상법 제3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제400조의 내용(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이사회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운영시기	구 성	관련법령	비 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상법 제542조의 11	
내부거래위원회	2018.03.30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2018.03.30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상법 제542조의 8	
보상위원회	2018.03.30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ESG 경영위원회	2021.11.08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다소 분산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철저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iii)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기채
-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 제외)의 매입 및 매각
- 기 승인된 투자사업 등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재기채 및 지급보증
-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 업무

나. 이사회의 주요 기능 수행 여부 판단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서 권고하는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보상위원회)와 함께, 이에 더하여 내부거래위원회 및 ESG 경영위원회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철저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사외이사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재무적 리스크와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 또한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부의사항에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 비재무적 리스크” 내용을 추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사회는 비재무적 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ESG경영위원회를 2021년 11월에 신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 또한 사외이사 위원장 및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사의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기능 수행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III -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여부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당사는 2021년 3월에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경영승계 유형과 선임 절차, 그리고 후보 요건과 후보군 관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당사는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기업집단 현대백화점의 지배구조 현장, 그룹 윤리강령, 윤리현장, 임직원 윤리실천경영지침을 준수하는 임원이 선정됩니다. 또한, 계열회사 혹은 관련 업계에서 최소 임원(미등기 포함)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여야 하며, 경력이 10년을 초과한 자로서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진행됩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적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부서에서는 임원선임(승진평가), 맞춤형 교육, 임원평가 및 그 외 후보군 관리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선임의 경우 사내 윤리규정, 인사평가 결과 등에 입각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내 인재개발원을 통하여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등의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 육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리더십 향상, 전략 수립, 조직역량 향상, 성과관리 방안, 전략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실적, 조직문화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임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ii) 공시대상기간 동안 교육 현황

당사는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임원 아카데미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및 비전, 사업전망 등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시	교육명	내 용	대 상	참석 인원 수	
21년	1월	임원아카데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사이트, 불확실성 대응 역량 향상 등	임원 전원	138명
	3~12월	임원의 시간	상시 학습 플랫폼 제공을 통한 영상 교육	임원 전원	138명
	3~7월	기업대학 경영자 과정	경영방침 기반의 경영전략, 비즈니스 트렌드, DT 등	상무급 1~3년차	64명
	2~5월	신임임원 아카데미	비전 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등	상무급 (승진자 교육)	19명

세부원칙 III - 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란, 기업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및 사건 등을 파악하고, 위험 선호도 내에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세스로 정의 됩니다.

당사는 실무진 중심의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리스크 발생 시 해당 조직과 유관부서의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재무적 리스크는 유형자산 투자 또는 타기업 지분 인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검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검토사항	관련규정
1단계	실무부서의 아젠다 도출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적정성 및 ESG경영에 부합하는지 여부	ESG 리스크 관리 지침
2단계	재무사항 검토 (경영관리팀, 재경팀)	투자 적정성 및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전결규정 및 투자심의 기준
3단계	ESG 검토 및 협의 (ESG 추진 협의체)	비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ESG 각 부문별 관련 법률 ESG 리스크 관리 지침
4단계	법무 검토 (법무파트)	컴플라이언스 검토	관련 법률
5단계	이사회 사전 설명 (경영관리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 설명 실시 (이사와 실무담당 간 대면 미팅)	1~4단계 검토사항 Q&A
6단계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관리팀)	1~5단계 검토사항 확인 후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심의 여부 결정	1~5단계 검토사항
7단계	이사회 (경영관리팀)	이사 간 안건에 대한 토의 후 심의 여부 결정	1~5단계 검토사항
8단계	공시 및 공고, IR (경영관리팀, 경영전략팀)	공시문안 등 회사 입장 검토 후 이해관계자 소통	관련 법률

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준수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는 경영상 리스크에 대해 각 부문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부서(경영관리팀, 재경팀, 법무파트) 및 ESG 추진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내 위원회와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와 이사회 개최 전에 실무 담당자들은 이사들에게 사전 방문하여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이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사와 실무 담당자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실무 담당부서 기준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 성					
의사결정 기구	이 사 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	↑	↑	↑	↑	↑
전담조직	경영관리팀	재경팀 내부회계관리파트	인사팀 노무팀	인사팀 법무파트	재경팀 내부회계관리파트	경영전략팀 총무팀/EHS담당 푸드유통기획팀 식품구매사업부 인사팀/노무팀 식품안전실 고객서비스파트 경영관리팀 재경팀
역할	경영관리 투자심의 이사회 운영 이사회/사외이사 평가	재경 내부회계 감사지원	업무성과 평가 보수한도 적정성 검토	사외이사 결격사유 검토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ESG 경영전략 친환경 경영 탄소배출 관리 직원 복지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 준수 CSR/지역사회 공헌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

이처럼 당사는 실무 전담조직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이미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 역할이 상충될 것이며, 전담조직의 업무 조정 또는 인력 배치 조정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체계화 되어 있어 당사가 직면한 리스크 관리 대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추가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목상” 존재하는 조직에 지나지 않아 조직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 규정 내 “부의사항”에서도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의 현실적인 여건과 리스크 관리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 체제를 유지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명문화된 근거를 기준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재무제표 등 회계/재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통제항목에 대하여 당사의 업무를 크게 9가지 형태(매출, 매입, 자금, 인사, IT, 투자, 회계, 재고, 자산)로 분류하고, 내부회계 담당부서 주관으로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한 후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보고 받은 후, 年 1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자는 당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분기 1회 이상 직접 참석하여 연간 감사계획 및 경과, 결과 등 감사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보고하고, 회계 및 업무 감사 외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자체적인 내부검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 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명확한 규정(윤리헌장, 그룹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한 상시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 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 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 사항, 당사와의 거래관련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는 직원윤리 상담실,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 담당부서인 경영전략팀 법무파트 주관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법률 교육 및 관련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준법경영 준수를 위한 리걸마인드 함양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법률 검토, 인감 사용, 소송 관리 등의 분야에서 담당 부서들로 하여금 법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또한 준법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준법경영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및 협력사와 신규 계약 시, 윤리실천 특별약관 운용을 통해 당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천명하고 윤리경영을 통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자체 진단 시스템 및 감사위원회의 준법 감시 활동,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회사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주주, 등기임원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시, 이사회는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진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전체 재적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권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안건은 정기보고서 공시 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 주석 표기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실적 등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공시의 경우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시(공정공시, 수시공시 등)는 경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근거로 직원 교육 및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현장에서도 공시정보 관리에 대해 선언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 자체검증을 통한 내/외부 리스크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IV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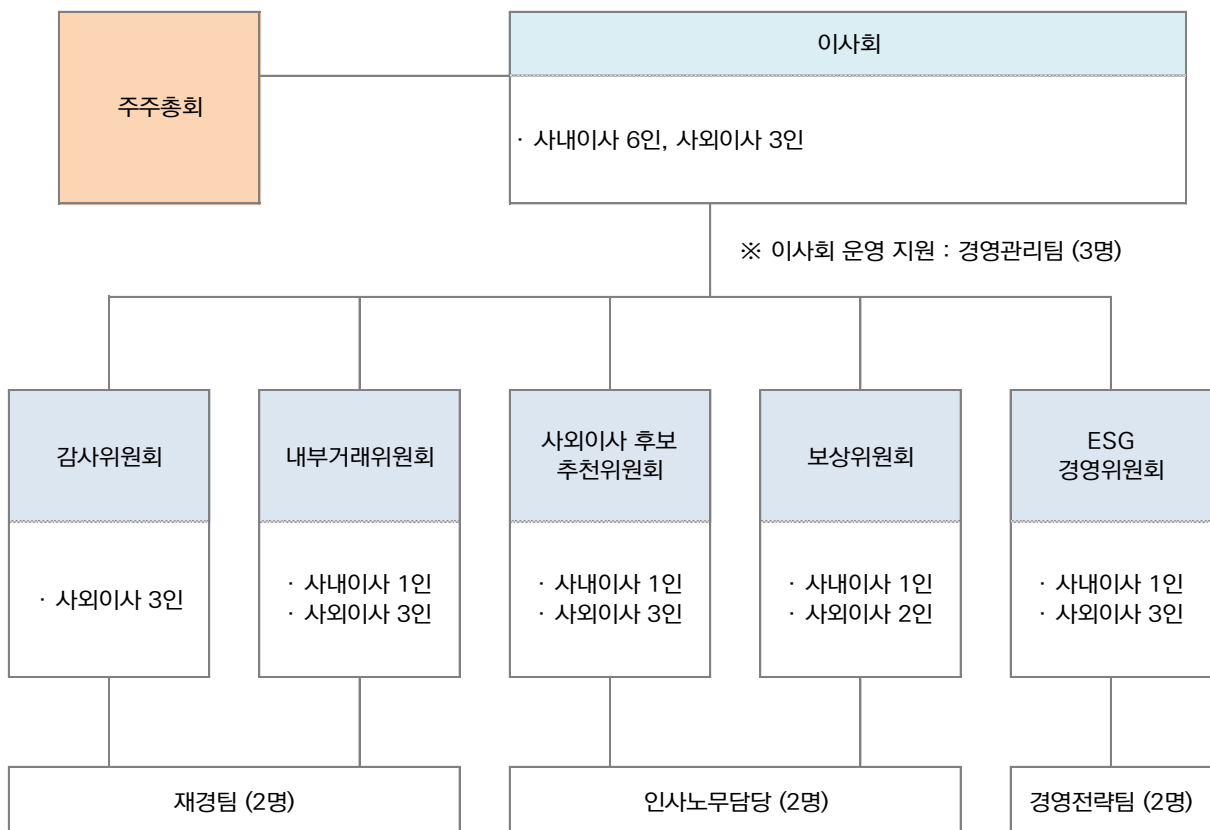
세부원칙 IV-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 표 4-①-1



주)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상법 제415조의 2)에 의거,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운영

주2) 타 위원회는 설치의무 없으나,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여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운영(18년 3월부)

주3) ESG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여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21년 11월부)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 표 4-①-2

구 분	성 명	성 별 (만 나이)	직 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박흥진	남 (58세)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5.03.27	2023.03.29	경영, 기획	現)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
사내 이사	정지선	남 (50세)		2002.03.15	2024.03.30	경영, 기획	現)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사내 이사	정교선	남 (48세)		2007.03.23	2023.03.29	경영, 기획	現)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사내 이사	장호진	남 (60세)		2010.05.28	2024.03.30	경영, 기획	現)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사장
사내 이사	정지영	남 (59세)	보상위원회 위원	2019.03.29	2023.03.29	영업, 마케팅	現)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부사장
사내 이사	이진원	남 (56세)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0.03.30	2024.03.30	회계, 감사	現)현대그린푸드 경영지원실장 상무
사외 이사	신수원	남 (65세)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03.29	2023.03.29	회계, 감사	前)광주지방 국세청장
사외 이사	정병두	남 (61세)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0.03.30	2024.03.30	법률	前)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외 이사	유원곤	남 (68세)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1.03.29	2023.03.29	식품, 위생	前)서울지방 식약청장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표 4-①-3

위원회	구 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 책	구 분	성 명	성 별	겸 임	
감사위원회 (총 3명) (A)	위원장	사외이사	신수원	남	B,C,D,E	·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원	사외이사	정병두	남	B,C,E	
	위원	사외이사	유원곤	남	B,C,D,E	
내부거래 위원회 (총 4명) (B)	위원장	사외이사	정병두	남	A,C,E	· 대규모내부거래의 적정성 심사,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 요청, 규정 위반 소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
	위원	사외이사	신수원	남	A,C,D,E	
	위원	사외이사	유원곤	남	A,C,D,E	
	위원	사내이사	이진원	남	E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총 4명) (C)	위원장	사외이사	정병두	남	A,B,E	·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	사외이사	신수원	남	A,B,D,E	
	위원	사외이사	유원곤	남	A,B,D,E	
	위원	사내이사	박홍진	남	-	
보상위원회 (총 3명) (D)	위원장	사외이사	유원곤	남	A,B,C,E	· 등기이사 보상정책 및 보상수준 적정성 심사, 이사 보수 한도액 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청
	위원	사외이사	신수원	남	A,B,C,E	
	위원	사내이사	정지영	남	-	
ESG 경영위원회 (총 4명) (E)	위원장	사외이사	신수원	남	A,B,C,D	· ESG경영 관련 업무 검토 및 결과 보고
	위원	사외이사	정병두	남	A,B,C,	
	위원	사외이사	유원곤	남	A,B,C,D	
	위원	사내이사	이진원	남	B	

(iv)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수, 비율, 연임 현황 등

당사는 이사 9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른 최소 기준(4분의 1)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가 철저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4조의 2에서는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과도한 연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임기현황은 "이사회 구성 현황" 표와 같으며, 최장기간 재임 중인 신수원 사외이사는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4년간 재직 중입니다.

(v)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미분리 시 선임 사외이사의 별도 선임 여부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경영환경과 그에 관련된 경험, 지식 등을 갖추고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표이사가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지원 부서에서는 이사회 개최 전 모든 이사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경영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사들의 추가적인 정보 요청과 제공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소속 이사들은 당사의 경영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당사 또한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철저히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먼저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선임 사외이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화두인 경영자 통제를 위한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사회 독립성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이사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객관적인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회계감사 관련사항을 보고합니다.
- 기타 위원회 또한 과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를 견제함과 동시에 이사회 감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및 투명경영을 선언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검증(이해관계, 겸직 등 법적요건)을 거쳐 추천을 받아야 선임될 수 있으며, 정관 제27조에서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연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적임 후보자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전체 이사진의 과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추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IV- 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제3항, 상법 제542조의 8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 정관 제33조에서는 반드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침은 물론이며, 그 역량 평가 및 선임에 있어 연령, 학력, 성별,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상근 임원 중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각자 현업 업무 외에도, 당사의 HR 규정 및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교육 및 워크샵에 참여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인 선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요 경력	선임 배경
정지선	現)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지속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지속 성장에 기여
정교선	現)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	
박홍진	現)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현대백화점 그룹 기획조정본부 부분부장을 역임하며 영업/기획 등 다양한 경영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
장호진	現)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
정지영	現)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현대백화점 그룹 내 영업전략/마케팅 최고 전문가로서 신규사업 추진 등 영업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
이진원	現) 현대그린푸드 경영지원실장	현대그린푸드 관리/경영지원 담당 임원으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공로 인정
신수원	前) 광주지방국세청장	세무/회계 분야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정병두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 분야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유원곤	前) 서울지방식약청장	식품안전 분야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식품위생 및 품질경영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표 4-②-1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재직여부
사내이사	박홍진	2015.03.27	2023.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정지선	2002.03.15	2024.03.30	2022.03.30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정교선	2007.03.23	2023.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장호진	2010.05.28	2024.03.30	2022.03.30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정지영	2019.03.29	2023.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이진원	2020.03.30	2024.03.29	2022.03.30	재선임	재직
기타 비상무이사	김병준	2010.05.28	2022.03.30	2022.03.30	임기만료	퇴임
사외이사	김형중	2017.03.25	2021.03.29	2021.03.29	임기만료	퇴임
사외이사	신수원	2019.03.29	2023.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사외이사	정병두	2020.03.20	2024.03.29	2022.03.29	재선임	재직
사외이사	유원곤	2021.03.29	2023.03.29	2021.03.29	신규선임	재직

나.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경영/경제/기획/회계/마케팅/식품/위생/법률 등, 회사를 경영 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내이사 중 5인은 부사장 이상의 직급, 1인은 당사의 CFO, 사외이사 전원은 오랜 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는 당사의 HR 교육계획에 근거한 정기 교육을, 사외이사는 분기별 1회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배주주 2인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사내이사로서 활동 중이며, 현재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 훼손 또는 권익침해 이력이 있었던 자는 없습니다.

당사가 공표한 기업지배구조현장에서도 이사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사회는 책임성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IV- 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설명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이사회 책임 하에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므로 위원회 결정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진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높은 책임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판단 하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정병두 사외이사, 위원은 사외이사 2인 및 박흥진 대표이사로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의 정원 또한 과반수를 넘으므로 위원회 의사결정상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i)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총회일 4주 전까지 이사 후보자의 상세약력, 겸직현황 등에 대한 정보 및 주주총회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4-③-1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1.02.22 (D-34)	2021.03.29	사 내	정교선	· 후보자 주요 약력 및 현직 · (사외이사) 겸직 현황	주주총회 소집결의
		사 내	박홍진		
		사 내	정지영		
		사 외	신수원		
		사 외	유원곤		
2021.02.26 (D-30)	2021.03.29	사 내	정교선	· 후보자 주요 약력 및 현직 · 독립성(이해/거래관계) 내용 ·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 내	박홍진		
		사 내	정지영		
		사 외	신수원		
		사 외	유원곤		
2022.02.25 (D-32)	2022.03.29	사 내	정지선	· 후보자 주요 약력 및 현직 · (사외이사) 겸직 현황	주주총회 소집결의
		사 내	장호진		
		사 내	이진원		
		사 외	정병두		
2022.02.28 (D-29)	2022.03.29	사 내	정지선	· 후보자 주요 약력 및 현직 · 독립성(이해/거래관계) 내용 ·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 내	장호진		
		사 내	이진원		
		사 외	정병두		

주) 재선임되는 이사의 경우 2022년 사업보고서 內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에서 과거 기간 이사회 활동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서 별도로 추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및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진 및 지배구조가 충분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시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단점 또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지난 2020년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기존 시행 중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추가로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여 개인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더욱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 규정을 준수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드시피, 최근 3년 내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지만, 홈페이지 내 주주제안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및 공시내용 등을 통해 담당자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고 소수주주들의 의견이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후보에 한하여 추천되므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내이사는 별도 추천 위원회는 갖추지 않았으나, 당사가 공표한 기업지배구조현장 에서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중 이러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없습니다.

세부원칙 IV- 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임원 포함) 설명

▷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박홍진	남	사장	등기	상근	대표이사
정지선	남	회장	등기	비상근	사내이사
정교선	남	부회장	등기	비상근	사내이사
장호진	남	사장	등기	비상근	사내이사
정지영	남	부사장	등기	비상근	사내이사
이진원	남	상무	등기	상근	사내이사, 경영지원실장
신수원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정병두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유원곤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이현상	남	전무	미등기	상근	상품본부장
최보규	남	전무	미등기	상근	유통외식본부장
김해곤	남	상무	미등기	상근	전략기획실장
이학명	남	상무	미등기	상근	식재사업부장
이상현	남	상무	미등기	상근	푸드서비스3사업부장
장재락	남	상무	미등기	상근	푸드서비스1사업부장
이종필	남	상무	미등기	상근	외식사업부장
박주연	여	상무	미등기	상근	그리팅사업담당
김현준	남	상무	미등기	상근	식품구매사업부장
김준구	남	상무	미등기	상근	푸드서비스2사업부장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임원은 책임경영을 준수하며, 현재 임원진 중 과거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었던 자는 없습니다. 당사는 임원 승진 및 선임 심사 시 "임원승진 신청 제도"와 "승진 평가 위원회" 를 운영함으로써, 임원선임에 있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승진 또는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임원 선임시 결격 사유에 대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회사와 관계에 있어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를 부담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미등기 임원은 내부 윤리규정과 내부 HR 평가를 근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 혐의 이력이 있었던 자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총 9인의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을 뿐,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하여 경영상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V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V- 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한 설명

(i)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내역이 없습니다.

(ii)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과의 거래내역 있는 경우 그 내역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와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중 유원곤 사외이사는 (주)삼양인터내셔널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위 회사와는 사업영역을 영위하는데 있어 부수되는 거래(통신서비스 이용료, 해충방제서비스 등)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외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각 사 또는 사외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기 i ~ iii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계열회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계열회사
신수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병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원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주) 삼양인터내셔널과의 주된 거래 내역은 해충방제서비스 및 담배 매입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단체급식, 유통사업 등)에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에 해당합니다.

(iv)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로 상정되기 전, 직접 대면 인터뷰 및 이력조회, 직접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법정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542조의 8)에 대해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기 법정사항에 대해 검증 후,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시 법적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 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후보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항과 함께 독립성, 전문성 및 주요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6년을 초과(계열회사 포함 9년) 하여 장기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9년 8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표 5-①-2

성 명	당 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시 그 사유
신수원	3년 3개월	-	3년 3개월	-
정병두	2년 3개월	-	2년 3개월	-
유원곤	1년 3개월	-	1년 3개월	-

다.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선임 전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했던 경력이 없습니다. 유원곤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의 거래내역은 있으나 해당 거래 규모는 2021년 한 해 동안 269백만원 가량으로 양사간의 회사 규모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수적인 재화/용역의 거래로(담배 매입, 해충방제서비스 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중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시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 근거하여 검증된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 받아 그 독립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규정 제4조 2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독립성 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V- 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2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결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6조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이사진의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서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진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②-1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 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재직기간	상장여부
신수원 (감사위원)	2019.03.29	2023.03.29	세무법인 에이블 대표세무사 회장	(주)창해 에탄올	사외이사	2020.03.24 ~ 현재 (임기 3년)	상장기업 (코스닥)
정병두 (감사위원)	2020.03.30	2024.03.3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유원곤 (감사위원)	2021.03.29	2023.03.29	삼양 인터내셔널 고문	-	-	-	-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업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과도한 겸직으로 인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약 2주 전에 일정 및 세부 안건 내용을 통보하고, 실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대면하여 사전 설명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외이사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수원 사외이사와 정병두 사외이사는 각자 세무/회계, 법률 전문가로서 본연의 전문자격을 보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타 회사에서도 일정 직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원곤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이외에 (주)삼양인터내셔널에서 고문을 맡고 있으며, 식품/위생 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중요도가 부각된 식품위생/안전 분야에 관련하여 당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및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V- 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8조, 제19조에서 사외이사 지원 범위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이사회 규정 제18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원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업무 전담부서를 경영관리팀으로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개최 전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대면 보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8조에서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이 기간 이전에 사외이사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ii)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여부와 그 내역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정기·임시회의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시작 전에 외부감사인들이 출석하여 경영진 배석 없이 사외이사들에게 회계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는 사외이사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 배석 없이 사외이사들만 참석하여 진행된 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5-③-1

구 분	일 자	주요 논의내용
1	2021.05.10	· 감사의 목적, 감사팀의 구성 · 경영진의 책임 · 재무제표 감사 계획
2	2021.08.09	·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 중요성 금액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3	2021.11.08	· 회계감사 진행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진행사항
4	2022.02.25	· 미수정 왜곡표시 · 감사의견 변형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감사결과 및 감사인 권고사항
5	2022.03.14	· 그룹감사결과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수정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나.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설명

당사는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외이사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 4월 부로 사외이사 보수 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사전에 직접 대면보고를 함으로써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상 주요 정보에 대한 누락 없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내부/외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부/외부 감사인간의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VI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VI- 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 해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이전 시점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과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채점 방식이 결정되었으며, 매년 평가 후 이사회에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 담당부서인 경영관리팀에서 평가를 진행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이사회 평가 또한, 이사회 심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써 이사회 구성원 각자 상호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ii)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관련 규정 등

당사 사외이사 평가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심의로 결정된 평가문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이사회 평가) 또는 담당부서에서(사외이사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그 사업연도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진행되며, 평가 종료 후 결과는 담당부서인 경영관리팀에서 종합하여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평가 및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결과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해당 사외이사 재선임 시 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 문항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회 평가

구 분 (문항 수)	구 분	평가점수 (100점 만점)
역할과 책임 (5문항)	지배구조현장 수립 여부, 경영이념 등의 산업 이해도, 경영진 책임사항과 윤리의무 인지 등	97.6
이사회 구조 (8문항)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분리, 규모의 적정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여부, 교육 여부 등	80.0
이사회 운영 (9문항)	이사회 개최 횟수, 참석률, 제규정 외부 공개 여부, 심의안건 관련 정보 접근성, 수정 또는 반대 여부 등	88.8
이사회 내 위원회 (11문항)	위원장의 사외이사 수행 여부,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여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감사 관련 교육 여부 등	94.2
평가 및 반영 (3문항)	평가 결과 공개 여부, 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 피드백 및 논의	97.4
합 계 (총 36문항)	-	93.4

② 사외이사 평가

구 분 (문항 수)	구 분	평가결과 (평가점수)
성실성 (7문항)	출석률, 위원회 소속 여부 및 활동 내용, 사전설명회 참석 여부, 관련 규정 숙지 여부 등	93.4
경영 및 윤리의식 (7문항)	주주 이익 대변 여부, 회사 비전 및 사업 이해도, 정기 소통 여부, 의사결정 시 리스크 고려 여부 등	99.0
리더십 및 주인의식 (5문항)	전문지식 활용도, 교육 참여 여부, 회사로부터 관련 경영정보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	100.0
합 계 (총 19문항)	-	97.2

세부원칙 VI-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설명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과 해당 정책의 수립 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한도를 근거로 한 기본 보수와 이사회규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결정시 성과 등 정성적 요인도 고려하지만, 최소한 동종업계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고자 하며, 최근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2022년 사업연도부터는 전년대비 약 7백만원 인상된 55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산정에 있어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특별히 회사 외부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문과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평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대우에 차등이 생긴다면 사외이사 업무 집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의 당사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와 함께 보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업계 수준을 병행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산정 및 재선임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등 회사와 이사 간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Ⅶ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Ⅶ-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

당사 이사회규정 제6조에서는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ii)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①-1

회차	안 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제1차	심의	1. 제5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배당정책 공표 승인의 건 3. 안전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2.08	2021.02.01	9/10
제1차	심의	1.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5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7.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8. 멕시코법인 증자 승인의 건 9. 2021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가결	정기	2021.02.22	2021.02.15	9/10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제2차	심의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4.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5.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재정의 건	가결	임시	2021.03.29	2021.03.22	7/10
제2차	심의	1. 현대IT&E 투자자 지분 인수 의 건 2. 해외지사 설립의 건 3. 평택센터 지점설립 및 등기의 건	가결	정기	2021.05.10	2021.05.03	9/10
	보고	1. 2021년 제1분기 실적 보고의 건 2. 공정거래 운영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보고				
제3차	심의	1. 해외법인 설립의 건	가결	정기	2021.08.09	2021.08.02	9/10
	보고	1. 2021년 제2분기 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제3차	심의	1. 멕시코법인 증자 승인의 건 2. (주)현대에버다임 분할 관련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건	가결	임시	2021.10.08	2021.09.29	10/10
제4차	심의	1. ESG경영위원회 설치의 건 2. 2022년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11.08	2021.11.01	9/10
	보고	1. 2021년 ESG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 제3분기 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제1차	보고	1. 제5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의 건	보고	임시	2022.02.14	2022.02.07	9/10
제1차	심의	1.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5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7. 2022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8. 안전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2.25	2022.02.18	9/10
	보고	1.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제2차	심의	1.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29	2022.03.22	7/10

		3.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4.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5. 지배구조현장 개정의 건						
제2차	보고	1. 2022년 제1분기 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2.05.12	2022.05.04	9/9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8조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석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합니다.

세부원칙 VII- 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당사는 정관 제39조, 이사회 규정 제17조에서 의사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의 결의서에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사록은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원본을 상시 보관 중이며, 이사회 결과와 관련된 공시 진행시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이 요구 시 즉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경우, 당사는 이른바 컨퍼런스콜 형식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된 이사회회의 녹취록은 이사회 지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보고자와 배석자가 직접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므로, 녹취록 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관계로 별도의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을 기재하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재하는지 여부를 기재.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②-1

① 2021년

구 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비 고
	개최일자	02.08	02.22	03.29	05.10	08.09	10.08	11.08	
사내이사	박흥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지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교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장호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지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진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기타비상무	김병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사외이사	김형중	참석	참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차 임기만료
	신수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정병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유원곤	미해당	미해당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차 신규선임

② 2022년

구 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 고
	개최일자	02.14	02.25	03.29	05.12	
사내이사	박홍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지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정교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장호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지영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진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기타비상무	김병준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3차 임기만료
사외이사	신수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정병두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유원곤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그리고 최근 3개 사업연도 각 이사별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②-2

성명	구 분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박홍진	사내	2015.03.27 ~ 현재	100.0 (23/23)	100.0 (7/7)	100.0 (8/8)	100.0 (8/8)	100.0	100.0	100.0	100.0
정지선	사내	2002.03.15 ~ 현재	73.9 (17/23)	85.7 (6/7)	75.0 (6/8)	62.5 (5/8)	100.0	100.0	100.0	100.0
정교선	사내	2007.03.23 ~ 현재	78.3 (18/23)	85.7 (6/7)	75.0 (6/8)	75.0 (6/8)	100.0	100.0	100.0	100.0
이동호	사내	2007.03.23 ~ 2019.03.29	100.0 (2/2)	-	-	100.0 (2/2)	100.0	-	-	100.0
장호진	사내	2010.05.28 ~ 현재	100.0 (23/23)	100.0 (7/7)	100.0 (8/8)	100.0 (8/8)	100.0	100.0	100.0	100.0

정지영	사내	2019.03.29 ~ 현재	100.0 (21/21)	100.0 (7/7)	100.0 (8/8)	100.0 (6/6)	100.0	100.0	100.0	100.0
권경로	사내	2017.03.31 ~ 2020.03.29	90.0 (9/10)	-	100.0 (2/2)	87.5 (7/8)	100.0	-	100.0	100.0
김병준	기타 비상무	2018.03.30 ~ 2022.03.30	17.4 (4/23)	28.6 (2/7)	12.5 (1/8)	12.5 (1/8)	100.0	100.0	100.0	100.0
김 광	사외	2015.03.27 ~ 2019.03.29	100.0 (2/2)	-	-	100.0 (2/2)	100.0	-	-	100.0
박승준	사외	2016.03.25 ~ 2020.03.29	90.0 (9/10)	-	100.0 (2/2)	87.5 (7/8)	100.0	-	100.0	100.0
김형중	사외	2017.03.31 ~ 2021.03.28	100.0 (18/18)	100.0 (2/2)	100.0 (8/8)	100.0 (8/8)	100.0	-	100.0	100.0
신수원	사외	2019.03.29 ~ 현재	80.9 (17/21)	85.7 (6/7)	87.5 (7/8)	66.7 (4/6)	100.0	100.0	100.0	100.0
정병두	사외	2020.03.30 ~ 현재	100.0 (13/13)	100.0 (7/7)	100.0 (6/6)	-	100.0	100.0	100.0	-
유원곤	사외	2021.03.29 ~ 현재	100.0 (5/5)	100.0 (5/5)	-	-	100.0	-	100.0	100.0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사회 특성상 회의별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의사록 작성으로 같음하고, 개별 이사들의 토의 내용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VIII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VIII- 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에 대한 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보상위원회, ESG 경영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당사 정관 제43조에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직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 성		주요 역할
	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위원회	신수원(위원장) 정병두 유원곤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거래 위원회	정병두(위원장) 신수원 유원곤	이진원	대규모 내부거래의 적정성 심사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 요청 규정 위반 소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정병두(위원장) 신수원 유원곤	박홍진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상위원회	유원곤(위원장) 신수원	정지영	등기이사 보상정책 및 보상수준 적정성 심사 등기이사 보수 한도액 심사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청
ESG경영 위원회	신수원(위원장) 정병두 유원곤	이진원	ESG 경영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경영 추구 ESG 관련 정책/업무 제반사항 심의 회사 안전보건관리정책 심의, 기업지배구조현장 제/개정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하므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 3명)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위원회 모두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들의 성과 및 보상정책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사내이사 또한 1명 이상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정원 3명 중 사내이사는 1명에 불과하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이므로, 사내이사가 안건 의결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세부원칙 Ⅷ- 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경영 투명성 및 주주권의 제고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제43조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 세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제/개정되며, 규정에서는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 선임 등 운영상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 결의로 선임됩니다. 각 위원회별 규정은 본 보고서 외 별첨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 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임면 등

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11, 정관 제43조의 1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 업무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외부감사인과는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출 석				안 건
		신수원	정병두	유원근	김형중	
1	2021.02.08	참석	참석	해당없음 (신규선임)	참석	- 2020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2021.02.22	참석	참석		참석	- 2020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0년 감사 보고의 건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3	2021.03.29	참석	참석	참석	해당없음 (임기만료)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위원 신수원)
4	2021.05.10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2020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5	2021.08.09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1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6	2021.11.08	불참	참석	참석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1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7	2022.01.28	참석	참석	참석		-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개정의 건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 준수사항 승인의 건
8	2022.02.14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9	2022.02.25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1년 감사 보고의 건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10	2022.05.12	참석	참석	참석		-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2021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정관 제43조의 2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 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 및 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출 석					안 건
		정병두	신수원	유원곤	박홍진	김형중	
1	2021.02.22	참석	참석	해당없음 (신규선임)	참석	참석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2	2021.03.29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해당없음 (임기만료)	- 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02.25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4	2022.03.29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위원장 선임의 건

③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결의로 설치되었으며, 내부 계열 회사간 내부거래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 그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거래금액 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출 석					안 건
		정병두	신수원	유원곤	이진원	김형중	
1	2021.02.22	참석	참석	해당없음 (신규선임)	참석	참석	- 2020년 제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2	2021.05.10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해당없음 (임기만료)	- 2021년 제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3	2021.08.09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제2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4	2021.11.08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2021년 제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2022년도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5	2022.02.25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1년 제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6	2022.03.29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위원장 선임의 건
7	2022.05.12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2022년 제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④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되었으며, 등기임원의 연간 보수 집행현황 보고 및 등기임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 임원의 연간 보수금액 한도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출 석					안 건
		신수원	유원곤	정지영	장호진	김형중	
1	2021.02.22	참석	해당없음 (신규선임)	해당없음 (위원교체)	참석	참석	- 2020년 이사보수 집행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 2021년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2	2021.03.29	참석	참석	참석			- 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02.25	참석	참석	참석	해당없음 (위원교체)	해당없음 (임기만료)	- 2021년 이사보수 집행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 2022년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⑤ ESG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신규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ESG 업무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통합 및 체계화하여 ESG 평가 등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기타 ESG 업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별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 차	개최일자	출 석				안 건
		정병두	신수원	유원곤	이진원	
1	2022.02.25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승인의 건 - 2022년 ESG 운영 계획 승인의 건
2	2022.03.29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증/평가하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일부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감사 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등),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의 출석률에 대한 설명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 별 개최 세부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위원)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8-②-1

① 보상위원회

- 공시대상기간 회의 개최내역

회 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 건		가결 여부
			구분	내 용	
제1차	2021.02.22	3/3	보고	1. 2020년 이사 보수 집행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보고
			심의	1. 2021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2차	2021.03.29	3/3	심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제1차	2022.02.25	3/3	보고	1. 2021년 이사 보수 집행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	보고
			심의	1. 2022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 분	성 명	출석률(%)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김 광	100.0	-	-	100.0
사외	김형중	100.0	100.0	100.0	100.0
사외	신수원	100.0	100.0	100.0	-
사외	유원곤	100.0	100.0	-	-
사내	장호진	100.0	100.0	100.0	100.0
사내	정지영	100.0	100.0	-	-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공시대상기간 회의 개최내역

회 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 건		가결 여부
			구분	내 용	
제1차	2021.02.22	4/4	심의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유원곤 사외이사)	가결
제2차	2021.03.29	4/4	심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제1차	2022.02.25	4/4	심의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정병두 사외이사)	가결
제2차	2022.03.29	4/4	심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 분	성 명	출석률(%)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박승준	100.0	-	100.0	100.0
사외	김 광	100.0	-	-	100.0
사외	김형중	100.0	100.0	100.0	100.0
사외	신수원	100.0	100.0	100.0	-
사외	유원곤	100.0	100.0	-	-
사외	정병두	100.0	100.0	-	-
사내	박흥진	100.0	100.0	100.0	100.0

③ 내부거래위원회

- 공시대상기간 회의 개최내역

회 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 건		가결 여부
			구분	내 용	
제1차	2021.02.22	4/4	보고	1. 2020년 제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제2차	2021.05.10	4/4	보고	1. 2021년 제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제3차	2021.08.09	4/4	보고	1. 2021년 제2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제4차	2021.11.08	3/4	심의	1. 2022년도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 2021년 제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제1차	2022.02.25	4/4	보고	1. 2021년 제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제2차	2022.05.12	4/4	보고	1. 2022년 제1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보고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 분	성 명	출석률(%)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박승준	100.0	-	100.0	100.0
사외	김 광	100.0	-	-	100.0
사외	김형중	100.0	100.0	100.0	100.0
사외	신수원	69.2	75.0	80.0	50.0
사외	정병두	100.0	100.0	100.0	-
사외	유원곤	100.0	100.0	-	-
사내	권경로	100.0	-	100.0	100.0
사내	이진원	100.0	100.0	100.0	-

④ ESG경영위원회

- 공시대상기간 회의 개최내역

회 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 건		가결 여부
			구분	내 용	
제1차	2022.02.25	4/4	심의	1. 2020년 제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2. 2022년 ESG 운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제2차	2022.03.29	4/4	심의	1. 지배구조현장 개정의 건	가결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 ESG경영위원회는 2021년 11월 신규 설치되었으며, 2022년 2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2021년에는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IV.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IX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IX-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한 설명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의해 설치되었는 바, 당사는 필요조건을 충족하여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11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는 해당 요건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극대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하였고, 법적 요건(상법 제 415조의 2)을 상회한 위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가 담당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표 9-①-1

구 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직 책	구 분	성 명	
위원장	사외이사	신수원	· 진주세무서장 (2008.04 ~ 2009.03)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3과 과장 (2009.03 ~ 2010.03) · 도봉세무서장(2010.03~2010.12) ·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2010.12 ~ 2012.12)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12.12~2014.01)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2014.01 ~ 2014.12) · 제48대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4.12 ~ 2015.12) · 세무사 자격 취득 (2016.01) · 세무법인 에이블 대표세무사 회장 (~현재)
위 원	사외이사	정병두	
위 원	사외이사	유원곤	

주) 신수원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4호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2) 해당 내용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감사위원회는 회사 업무 및 회계 감독 역할 특성상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1명의 회계/세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법률, 식품/위생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신수원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관련 업종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요건들을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규정 제16조에서는 이사의 겸업금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선정시 당사가 검토하는 법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필요조건	당 사
상법 제 415조의 2	· 3명 이상의 이사, 2/3 이상 사외이사 · 위원회 결의로 대표할 자를 정할 것	· 전원(3명) 사외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신수원 사외이사
상법 제 542조의 11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일 것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신수원 사외이사 : (前)광주지방국세청장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신수원 사외이사
상법 제 542조의 10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결격사유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결격사유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i)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3조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또한, 회사재산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23조).

이 외에,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訴)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訴) 제기 결정 여부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평가

-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더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의 영업상 비밀 누설 금지(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세미나 참석, 외부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 차	구 분	교육실시 주체	참석자	주요 내용
1	2021.04.22	감사위원회포럼	신수원, 정병두, 유원곤	ESG 정의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2	2021.07.22	삼정회계법인	신수원, 정병두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및 부정신고 조치
3	2021.12.28	상장사협의회	신수원, 정병두, 유원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해설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에서는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부서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부서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25조).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등에 관하여 이사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조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회계/재무/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권한과 함께 다양한 감사절차/지원 절차로 하여금 이를 뒷받침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업무집행은 당사 내부회계관리파트에서 담당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조직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감사부서 직원의 전출입이나 해고 시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게 하는 등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담당직원 (수)	직원 (근속연수)	주요 지원사항
내부회계 관리파트	2명	책임(12년) 선임(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보고 ·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보고 · 감사위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 지원 ·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업무 지원 ·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해당 부서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재무/회계 관리자급 직원을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감사위원회 요청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고 체계를 갖추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적/시점적 차이를 두지 않게 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정보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공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최대한의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로서의 보수와 이사회 규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지급된 감사위원들의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3	163백만	54백만

라.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감사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감사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적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을 수행 중인 신수원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회계재무 전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른 사외이사들의 감사 업무 수행 역량 향상을 위하여 내부/외부 교육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교육시 회계감사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상장사협의회) 주최하는 강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정시 상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또는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구성/운영/직무뿐만 아니라 내부 경영진/임직원의 부정행위 발생시 조사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활동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파트에서 감사위원회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발생시 부수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IX- 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

(i)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서는 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근거로 분기별 정기 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정기위원회에서는 분기 재무제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2022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서 선임하여, 2022년부터 3년 동안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정기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통해 회사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였습니다.

(ii)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

해당 기간의 당사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9-②-1

회 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 건		가결 여부
			구분	내 용	
제1차	2021.02.08	3/3	보고	1. 2020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제2차	2021.02.22	3/3	심의	1. 2020년 감사 보고의 건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보고	1. 2020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제3차	2021.03.29	3/3	심의	1. 감사위원장(감사위원 신수원) 선임의 건	가결
제4차	2021.05.10	3/3	심의	1. 2020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가결
			보고	1.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의 건	보고
제5차	2021.08.09	3/3	보고	1. 2021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1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의 건	보고
제6차	2021.11.08	2/3	보고	1.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1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의 건	보고
제1차	2022.01.28	3/3	심의	1.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개정의 건 2. 2022 ~ 2024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승인의 건	가결
제2차	2022.02.14	3/3	보고	1. 2021년 4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심의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제3차	2022.02.25	3/3	보고	1. 2021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심의	1. 2021년 감사 보고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제4차	2022.05.12	3/3	보고	1.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의 건	보고
			심의	1. 2021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가결

해당 기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년

구분	회 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 고
	개최일자	02.08	02.22	03.29	05.10	08.09	11.08	
사외	신수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김형중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임기만료
	정병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유원곤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규선임

② 2022년

구분	회 차	1차	2차	3차	4차	비 고
	개최일자	01.28	02.14	02.25	05.12	
사외	신수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정병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유원곤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출석률(%)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김 광	100.0	-	-	100.0
	박승준	92.9	-	100.0	85.7
	김형중	100.0	100.0	100.0	100.0
	신수원	79.4	83.3	80.0	75.0
	정병두	100.0	100.0	100.0	-
	유원곤	100.0	100.0	-	-

(i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절차,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4장은 감사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계획의 수립부터 직접조사에 이르기까지 감사 절차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17조에서는 의사록 작성 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40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주주총회시 주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하여 매 분기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위원회에서는 분기 재무제표 보고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당사의 내부 규정도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최소 83% 이상의 출석률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정 등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대면 보고를 통해 위원회 보고/결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구성/운영 관련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여 감사위원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X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X- 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규정과 감사위원회 규정 제35조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8일 감사위원회에서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삼정회계법인과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2월 14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2022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ii) 감사인 선임 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 사항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참석 감사위원
2022.01.28	1.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개정의 건 2. 2022 ~ 2024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전원참석
2022.02.14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전원참석

2022년 2월 14일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품질(경험, 전문성, 독립성, 업무관여도 등) 과 입찰가격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서 제출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삼정회계법인을 선정 및 선임하였습니다.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감사 수행팀의 역량(경험, 전문성, 업무부담, 징계이력), 회계법인의 역량(품질관리, 독립성 및 법규준수,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투입인력 및 시간, 업무관여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당사는 종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에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이행을 위해 2021년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년도 감사 업무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의 독립성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감사업무는 관계법령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당사와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업무 계약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정 계약으로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 보수
제55기	2022년 5월	세무조정	2022.05 ~ 2023.03	20백만
제54기	2021년 4월	세무조정	2021.04 ~ 2022.03	20백만
제53기	2020년 6월	세무조정	2020.06 ~ 2021.03	20백만

상기 비감사용역을 제외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최근 3년간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인	용역 내용	용역 보수	총 소요시간
제55기 1분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재고실사, 금융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감사	705백만	478시간
제54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재고실사, 금융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감사	684백만	6,647시간

제53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재고실사, 금융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연결감사	631백만	6,441시간
------	--------	---	-------	---------

주) 제55기 1분기 용역 보수는 1년 단위 금액이며, 총 소요시간은 1분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2022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와 비감사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직무제한)의 준수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의 필요성과 보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통하여 감사품질과 입찰가격 등 객관적인 입찰 지표와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후에도,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감사 주요 이슈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사업연도 부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해당 연도 감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는지, 감사위원회에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외부감사인 감사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X- ②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에 대한 설명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에 대한 설명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계획과 결과 등 외부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자	주요 논의내용
1	2021.05.10	· 감사의 목적, 감사팀의 구성 · 경영진의 책임 · 재무제표 감사 계획
2	2021.08.09	·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 중요성 금액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3	2021.11.08	· 회계감사 진행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진행사항
4	2022.02.25	· 미수정 왜곡표시 · 감사의견 변형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감사결과 및 감사인 권고사항
5	2022.03.14	· 그룹감사결과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수정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ii) 주요 협의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당사 외부감사인도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시 외부전문가 선임, 위반 사실 조사, 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 등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고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서면,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이 검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4조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와 이와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v)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제54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22년 3월 29일에 개최하였고, 외감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구 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	외감법상 재무제표 제출기한
감사전 재무제표	2022.02.08	2022.02.14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2022.02.14	2022.02.28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를 연간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감사위원회의 요청 시 외부 감사인과의 회의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약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V. 기타 주요사항

당사는 당사의 경영이념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의 권리존중, 고객사/소비자·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 수행, 근로자의 권리 존중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고민하며, 대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사적 ESG 관리체계 구축

당사는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와, 이에 관련한 법률 개정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가 소속된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에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된 25개 국내 계열회사의 집단) 당사를 포함한 (주)현대백화점, (주)현대홈쇼핑, (주)한섬, (주)현대리바트, (주)현대퓨처넷, (주)현대에버다임, (주)현대바이오랜드, (주)현대이지웰 9개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SG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체는 당사가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에 설치한 ESG경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전담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FO급 임원이 협의체 위원장을 담당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ESG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ESG 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ESG 리스크에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분야로 확대하고, 소비자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친환경활동 촉진을 위해 당사는 판매 중인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변경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인 팬캡(완충재) / 그물망을 제외 하였으며, 시판 중인 그리팅 제품의 배송 시 물을 원료로 한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과 고객의 친환경 생활습관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과 고객이 지속 가능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너리 포인트 프로그램’

및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4천여 명의 고객과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활동 참여시 임직원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잔반 제로(Zero), 저탄소 메뉴 이용,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미사용 등 다양한 활동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기물 저감에도 관심을 갖고 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업사이클링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시산』과 협업하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식품용기를 수거한 후 수납형 의자로 재탄생시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팅 용기 등의 폐기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영업점의 인테리어 소재로 제작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려진 페트병을 100% 재활용한 국제 GRS 인증 원사를 사용한 친환경 유니폼(영양사 가운, 앞치마) 도입, 유니폼 제작 후 배출되는 자투리 원단을 활용하여 '업사이클 앞치마' 제작 및 고객 이벤트 굿즈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식재료를 이용하여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저탄소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두부, 콩, 대체육 등을 활용한 140종 이상의 메뉴를 개발 완료하여 전국 448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 제공 중입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연간 171만식의 저탄소 메뉴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메뉴 개발을 통해 매년 5%씩 이용 식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Net-Zero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 이상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K-RE100에 가입하여('22년 4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사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물류센터와 성남 공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존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 산불사태를 복구하기 위한 금전 지원, 탄소중립의 숲 가꾸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장애인 복지,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제품 구입 등 평소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회현안 및 소외계층 지원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당뇨질환 독거노인 200여 분께 매 주 4끼의 그리팅 저당식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신규사업 런칭과 동시에 이루어진 어르신들의 건강개선과 식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 나눔입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회사의 명칭을 활용한 이름으로 "그린메이트(Green Mate)" 라는 직위로 채용하여 전국 사업장에서 현재 약 1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존중·삶의 질 제고

당사는 직원들의 학업/출산/육아와 회사 일 병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자 재입사프로그램 운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직원에게는 대표이사 축하편지와 함께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하며, 업계 최초로 PC-OFF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월 1회 부서원들이 다같이 한꺼번에 쉬는 "가족사랑Day", 장기간 휴가를 통한 재충전이 가능한 안식월, 안식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업계 최초로 하루 2시간의 짧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최저 수준 이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메뉴에서 윤리경영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윤리경영 준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소속된 현대백화점그룹은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그룹윤리위원회'와 윤리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윤리실천 사무국' 및 '각 회사별 '윤리 실천 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기조 강화 및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영사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 신문고 및 제보 hot line을 운영하는 등, 당사는 윤리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권리존중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일 시	주요 내용
이사회 내 위원회	2018.03	· 기존 감사위원회에 추가 설치/운영 ·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기반의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
순환출자 해소	2018.04	· 법 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해소
전자투표제 도입	2019.05	·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규정 신설	2019.08 2021.02	·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을 이사회 규정으로 도입(6년 초과 금지) · 이사회 규정('19년 8월) 및 정관('21년 2월) 개정
지배구조헌장 도입	2019.08	·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프로그램 참여	2020.03 이후	·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3/30)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 개정	2020.03	·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통지일을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 앞당김으로써 이사들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
배당정책 공표	2021.02	· 주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3개년 배당정책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3	·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고경영자 교체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 공백 최소화
ESG리스크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2021.03	·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
ESG경영위원회 설치	2021.11	· ESG경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 설치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2022.02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사외이사 재선임의 객관적 근거 마련

□ 공정한 임직원의 보상 체계

당사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관리 제도인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지속 성과관리를 위한 OKR(Objective, Key Results)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및 평가결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보수는 경영실적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되어 첨부하는 기업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6. 보상위원회 규정
7. ESG경영위원회 규정
8. 기업지배구조헌장
9. 윤리헌장, 그룹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10. 내부회계관리규정
11. ESG 리스크 관리 규정
12. 공시정보 관리 규정
1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 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 여부	
		○	X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하단 별도표기	○	
	② 전자투표 실시 *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X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X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의 부존재	○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		○		
	⑮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주) 작성 기준 시점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2)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이며, *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

- ① 금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은 3월 29일이며, 소집공고는 동년 2월 28일에 진행(29일 전)
- ② 금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음 (총 10,686,653주 - 10.94% 참여)
- ③ 주주총회 분산 개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아닌 날에 개최하였음(3월 29일)
- ④ 당사는 공정공시를 통하여 당사의 3개년 배당정책을 공표하였음 ('21년 2월 8일)
- 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임
- ⑥ ESG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임
- ⑦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수행 중임
- ⑧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 ⑨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제도와 평가 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제8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규정 제 10조의 2)
- ⑩ 당사 정관 제27조와 이사회 규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당사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신수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잔여임기 포함 4년임
- ⑪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21년 4월 22일, 7월 22일, 12월 28일 외부 교육에 참가하였음 (주관 기관 : 감사위원회 포럼, 삼정회계법인, 한국상장사협의회)
- ⑫ 별도 내부감사 업무 지원 조직 존재 (내부회계관리파트),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신분 또한 보장되어 있음 ('21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 다. 항목)
- ⑬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수원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함
- ⑭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경영진 배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미팅을 실시 중임
- ⑮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감사위원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